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선 람	기관장

제33호 2019. 9. 11(수)

훈 령

- 남원시 훈령 제405호 남원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 1
- 남원시 훈령 제406호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생산물 처분에 관한 규정 ----- 22

고 시

- 남원시 고시 제2019-92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 28

회 람										
--------	--	--	--	--	--	--	--	--	--	--

남원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9년 09월 11일

남원시 훈령 제 405 호

**남원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남원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 ①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13조의4에 따른 적극행정면책에 대한 면책기준,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남원시 자체감사 규칙」 제2조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 「지방자치법」 과 「행정감사규정」 ”을 “ 「지방자치법」 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으로,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이라 함은, 공무원 등”을 “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감사를 받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이라 함은, 「행정감사규정」에 의한”을 “이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및 「남원시 자체감사 규칙」에 따른”으로, “제규정으로 말미암아”를 “모든 규정으로”로, “관련하여 그 업무를”를 “업무를”로, “공무원 등에 대하여”를 “공무원 등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남원시”을 “시”로 한다.

3. “불이익한 처분 등”이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및 「남원시 자체감사 규칙」상의 징계, 경고, 훈계 등의 조치를 말한다.

제4조 중 “의한 면책은 남원시”를 “따른 면책은 시”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 ① 시의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3.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의 규정”을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5인”을 “5명”으로, “남원시”를 “시”로 한다.

제8조 중 “감사 종료시에 피 감사기관장에게 면책제도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를 “감사가 끝났을 때에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면책제도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피 감사자에 대하여”를 “공무원 등에게”로, “시에는 당해”를 “경우에는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피 감사자가 면책심사를 받고자 하는”을 “공무원 등이 면책심사를 받으려는”으로, “첨부하여”를 “붙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피 감사기관”을 “감사대상 기관”으로, “소속 공무원 중에서”를 “공무원 등이”로, “증빙자료”를 “증명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면책심사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감사결과에의 처분지시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10조 본문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에 따른”으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제2항 중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소속 기관의 장”을 “감사대상 기관의 장이나 공무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13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등에 대한”을 “등에게”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남원시”를 “시”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처분의 효력)”을 “(경고 등 처분의 효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함에 있어”를 “할 경우”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처분사유)”를 “(경고 등 처분사유)”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반복무규정”을 “모든 복무규정”으로, “등에 위반한”을 “등을 위반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부실한”을 “부실할”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관의 위신을 실추케 한”을 “시의 위신을 떨어뜨린”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발생한”을 “발생할”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야기하거나”를 “일으키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못한”을 “못할”로 한다.

제17조 단서 중 “공무원에 대해 임용권 등으로 인하여”를 “공무원 등에게 임용권 등으로”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적시하여 이를 통보하여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를 알려야”로 한다.

제18조 중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히 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을 정한다.</p> <p>②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남원시의 종합감사·부분감사·기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받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고,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p>	<p>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13조의4에 따른 적극행정면책에 대한 면책기준,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남원시 자체감사 규칙」 제2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삭 제></p>

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과 「행정감사규정」 및 「남원시 자체감사 규칙」에 의거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라 함은,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면책"이라 함은, 「행정감사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이하 "처분"이라 한다)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3. "불이익한 처분 등"이라 함은

제2조(적용범위) -----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및 -----
-- 따라 -----
-----.

제3조(정의) -----
----- 다음 각 호와 -----.

1. -----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감사를 받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
2. -----이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및 「남원시 자체감사 규칙」에 따른 -----
--- 모든 규정으로 -----
-----업무를 -----
공무원 등에게 -----
-----.
3. "불이익한 처분 등"이란 「지

「행정감사규정」 및 「남원시 자체감사 규칙」상의 징계 등의 조치를 말한다.

4. "경고 등 처분"이라 함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남원시의 감사를 받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경고 및 기관경고·훈계(이하 "경고 등"이라 한다) 처분을 말한다.

제4조(면책대상자) 이 규정에 의한 면책은 남원시의 감사를 받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게 적용한다.

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 이 규정에 의한 적극행정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면책처리 한다.

- 1. 공익성 :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

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 및 「남원시 자체감사 규칙」상의 징계, 경고, 훈계 등의 조치를 말한다.

4. -----이란-----
-----따른-----

시-----

제4조(면책대상자) ----- 따른
면책은 시-----

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 ① 시의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원 등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
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
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2. 타당성 :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
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제반
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
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
당성이 있을 것

3. 투명성 : 의사결정의 목적·
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
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
하게 처리하였을 것(단, 일반
적 인 절차에 따른 업무처리
로는 국가안위 및 공공 이익
증진 등의 행정목적 달성이
명백하게 곤란할 정도의 시급
성·불가피성 등이 있는 경우
에는 투명성 요건을 완화하여
적
용 가능)

제6조(면책대상 제외) 제5조의 규
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
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
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

2.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
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
였을 것

3.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
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다
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
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
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
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
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제6조(면책대상 제외) 제5조-----

상에서 제외한다.

- 1. ~ 4. (생략)
- 5.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
 -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제7조(면책심의회 설치 및 운영)

- ① (생략)
-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부서의 장, 남원시 소속 공무원 중 심의안건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③ (생략)

제8조(면책제도 안내) 감사주관 책임자는 감사 중 또는 감사 종료시에 피 감사기관장에게 면책제도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안내한다.

제9조(면책심사 신청) ① 감사자 또는 감사부서 책임자는 감사결과 피 감사자에 대하여 면책조치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당해 심의회에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피 감사자가 면책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

-----.

- 1. ~ 4. (현행과 같음)
- 5. 그 밖에 -----

제7조(면책심의회 설치 및 운영)

- ① (현행과 같음)
- ② -----
- 5명 -----
- 시 -----
-
-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면책제도 안내) ----- 감사가 끝났을 때에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면책제도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
-----.

제9조(면책심사 신청) ① -----

-- 공무원 등에게 -----

경우에는 해당 -----
-----.

② 공무원 등이 면책심사를 받으려는 -----

의 감사부서 책임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피 감사기관의 장은 감사를
받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별
히 면책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면책사유에 해당하
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시장
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
한 면책심사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감사결과의
처분지시(징계의결요구)가 이루
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
만, 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
일을 경과한 때에는 신청할 수
없다.

제10조(면책심사 처리) 감사부서
책임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
여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
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
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면책심사신청인(이하 “신
청인”이라 한다)의 비위내용이
경징계 이상의 문책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붙여 -----
-----.

③ 감사대상 기관-----
--- 공무원 등이 -----

-- 증명자료-----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면책
심사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감사결과의 처분지시
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10조(면책심사 처리) -----
----- 제9조에 따른 -----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

-----.

<단서 삭제>

심사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회 의 개최 및 의결)

- ① (생략)
- ②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하며, 심의회 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결과의 처리) ① 심의

회의 심사결과는 최종 양정결정 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처분사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유의사항) 이 규정에 의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업무 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 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심사를 느슨하게 하

제11조(심의회 의 개최 및 의결)

- ① (현행과 같음)
- ② -----

-----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

제12조(심사결과의 처리) ① -----

----- 감사대상 기관의 장이나 공무원 등-----.

② -----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

제13조(유의사항) ----- 따른

----- 등에게 -----

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처분대상 및 종류) ① 이 규정에 의한 경고 등 처분대상은 남원시의 감사 또는 조사를 받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게 적용한다.

② (생략)

제15조(처분의 효력) ① (생략)

② 시장은 지방행정 역점시책 추진실적 평가시 기관장 또는 그 기관이 경고 받은 횟수를 반영하여 재정지원 또는 포상 등 기타 수혜적 조치를 함께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16조(처분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반복무규정 또는 중앙행정 기관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지시, 예규, 규칙 등에 위반할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추진이 부실한 때
3. (생략)

-----.

제14조(처분대상 및 종류) ① ---

---- 따른 -----
-- 시-----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경고 등 처분의 효력) ①

(현행과 같음)

② -----

그 밖에 ----- 할 경우
-----.

제16조(경고 등 처분사유) -----

-----.

1. 모든 복무규정 -----

----- 등을 위반
할 ---

2. -----

-- 부실할 --

3. (현행과 같음)

4.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관의 위신을 실추케 한 때

5. (생략)

6. 징계책임이 없는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경미한 비위가 발생한 때

7. 기관장이 부당한 지시 또는 정책결정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주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때

8. 기타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때

제17조(처분권자) 제14조제2항의 경고 등 처분은 시장이 행한다. 단, 훈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 임용권 등으로 인하여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유를 입증할만한 내용과 사실을 적시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처분방법) 경고 등 처분은 처분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처분 대상자 또는 처분기관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처분장을 교부한다.

4. -----
시의 위신을 떨어뜨린 ---

5. (현행과 같음)

6. -----
----- 발생할 --

7. -----
----- 일으키거나-----

8. 그 밖에 -----
----- 못할 --

제17조(처분권자) -----

----- 공무원 등에게 임용권 등으로 -----
----- 해당 -----
-----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를 알려야 -----.

제18조(처분방법) -----
----- 별지
제6호서식-----
-----.

제19조(기록유지) ① 경고 등 처
 분을 받은 기관에서는 별지 제7
호 서식에 의거 처분상황을 기
 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9조(기록유지) ① -----
 ----- 별지 제7
호서식에 따라 -----
 -----.
 ②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면책심사신청 안내(제8조 관련)

남원시 주관 ○○○감사를 받은 공무원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 본인
 - ※ 감사를 받은 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서 붙임
-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2. 신청기간 : 감사결과 처분 이전

3. 적극행정 면책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다음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
- 음주운전 및 성폭력·성매매·성희롱 등을 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
- 그 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공무원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종질지(80/㎡)]

[별지 제2호서식]

면책심사 신청서(제9조 관련)

감사지적 사항	
구체적 판단 기준	신 청 내 용
1. 불합리한 규제개선, 업무 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2.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3.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가.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소속기관 감사부서 의견

※ 필요시 관련증빙서류 및 의견서 붙임

「남원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면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 명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하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별지 제3호서식]

면책심사조서(제10조 관련)

감사기관명		감사 연월일	
건명			
신청인			
심사대상자			
징계양정(안)			
감사지적 사항			
신 청 내 용	불합리한 규제개선,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감사부서 종합의견			

[별지 제4호서식]

면책심사위원회 심사결과(제11조 관련)

심사 개요	일시		장소	
	안건			
	양정 (안)			
심사결과				

20 . . .

면 책 심 사 위 원 회	위 원 장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간 사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 [백상지(80/m²) 또는 중질지(80/m²)]

[별지 제6호서식]

경 고(훈 계)장(제18조 관련)

소	속	
직	위 (급)	
성	명	
위반 및 처분내용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직인)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생산물 처분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9년 09월 11일

남원시 훈령 제 406 호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생산물 처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개발 및 분양사업 등 업무 수행으로 얻어지는 각종 생산물 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물”이란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 연구개발 사업, 분양사업 및 벼 병해충 예찰답 운영,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운영으로 얻어지는 농·축산물, 미꾸리(미꾸라지 포함), 미생물 및 농산물 가공품 등을 말한다.
2. “잔여분”이란 분양사업 수행 후 분양되지 않고 남은 생산물 또는 연구개발사업 수행 후 생산된 생산물 중 품질확인을 위한 각종 검사에 사용되고 남은 생산물을 말한다.
3. “처분”이란 생산물과 잔여분을 필요한 절차에 따라 구분하여 처리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생산물 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계획수립) ① 생산물을 생산하는 부서에서는 연구개발사업, 분양사업, 예찰답 운영, 농산물 가공교육센터 운영계획 수립 시 생산될 생산물의 분양 계획과 생산물 및 잔여분 발생 시 처분계획을 추가하여 수립한다.

② 분양계획은 생산 예상량을 산정하고 분양대상자의 자격과 예상 분양 시기 등을 표시한다.

③ 잔여분 처분계획은 잔여분 발생 시 이를 분류하고 처분을 이행해야 할 사항들과 처분 방법에 대해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제5조(생산물의 관리 및 분양) 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센터소장”이라 한다)은 생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분야별 담당을 책임자로 지정하고 생산물의 관리와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산물 생산부서의 장은 생산물의 종류별 특성에 맞게 보관 및 육성, 배양하여 연구개발사업 목적수행 및 분양 시까지 변질 및 폐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리와 분양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센터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 결과 생산된 농·축산물 가공품의 경우 주로 관능평가용으로 활용하여 품질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생산물의 분양은 각 분야별 생산물 발생 시 별도의 분양계획에 따라 추진한다.

⑤ 생산물은 별도의 규정이나 계획이 없는 경우 유상분양을 원칙으로 한다.

⑥ 유상분양 시 분양대금은 시 세외수입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⑦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생산된 생산물로서 별도의 분양이 필요치 않는 생산물은 제7조에 따른 잔여분 처분방법에 따른다. 단, 농가 공동수행 연구개발사업으로 시험농가 농장에서 생산된 생산물의 경우 그 생산물의 처리는 농가와의 사전 협약에 따른다.

제6조(잔여분의 구분) 센터소장은 잔여분의 처분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폐기”는 잔여분이 질병에 감염 혹은 오염되어 2차 감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잔여분을 활용했을 경우 시험연구 결과 및 농업기술센터 내에 보유 중인 타 작물 및 생물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시험연구 결과 품질확인을 위한 각종 검사에 사용되고 보관할 필요가 없는 잔여물과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생산물인 경우
2. “시험연구용”은 크기, 상태, 효과 등이 양호하여 생산 외의 각종 시험연구에 재활용이 가능한 잔여분
3. “보관용”은 시험연구용 잔여분 중 시험연구 시기가 미도래 한 잔여분으로 크기, 상태, 효과 등이 시기도래 시까지 유용한 잔여분과 특성상 저장시기를 필요로 하는 시험연구용 잔여분
4. “채란용”은 미꾸리 성어양식 실증시험 후 생산된 미꾸리 성어 잔여분 중 일정한 크기 이상으로 성장하여 미꾸리 인공부화 치어 생산을 위한 친어(암·수포함)로 사용가능한 잔여분

제7조(잔여분 처분방법) 잔여분의 처분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1. 잔여물 중에서 가장 양질의 잔여물을 시험연구용으로 최우선 배정하여 연구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2. 미꾸리 인공부화 치어 잔여분의 경우 성어양식 실증시험 연구에 활용토록 하고 잔여분이 질병에 걸렸거나 기형인 경우 폐기하며, 폐기방법으로는 물기가 없는 토양에 매립한다. 또한 성어양식 실증시험 연구용과 폐기용 외의 미꾸리 인공부화 치어 잔여분은 채란용 어미 보관수조에 보관하여 어미로 보관 육성
3. 미꾸리 성어양식 실증연구에서 생산된 미꾸리 성어는 그 크기가 체장 9센치미터, 어체중 8그램 이상은 채란용으로 사용하며, 그 이하는 각종 시험연구용으로 활용하고 그 외 질병에 걸렸거나 기형인 성어 미꾸리는 경비견 사료용으로 폐기 처리
4. 춘향씨감자 원원종의 경우 잔여분은 토양에 매립하여 전량 폐기
5. 친환경 미생물의 경우 잔여분은 미꾸리 양식시험 연구용 및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실증시험포에서 시험연구용으로 활용하며, 그 외의 잔여분과 균수 미달 및 균주가 혼합되어 농가 분양이 불가능한 미생물 잔여분은 토양살포 등의 방법으로 폐기
6. 보관 중 유통기한이 경과되거나 가공 중 미생물 오염 및 생산직후 물성, 빛깔 등이 가공품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잔여분은 토양 매립 등의 방법으로 전량 폐기

제8조(대장관리) 생산물을 생산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잔여분 처분 대장을 갖춰 두고 처분에 관한 사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잔여분 처분대장

품명 : (단위 :)

처 분 내 역						결 재		
일자	처분처	처분 방법	수량	누계	비고	담당자	담당	과장

※ 처분방법 : 시험연구용, 보관용, 채란용, 폐기 등

남원시 고시 제2019-92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 시행 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9년 09월 11일

남 원 시 장

- 1. 사 업 명 : 개간사업
- 2. 사업목적 : 미간지를 농지로 조성하여 소득증대 기여
- 3. 사 업 비 : 자력사업
- 4. 사업내용
 - 가. 위 치 : 남원시 주생면 내동리 산83-4
 - 나. 사 업 량 : 2,133m²
 - 다. 사업기간 : 2019. 09. 31. ~ 2020. 08. 31.
 - 라. 사업시행자 : 남원시 고*길 37-*, 김**
-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농정과 농업시설(620-638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